서 울 특 별 시 중 구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제목 정보공개 청구서 처리(제3205675호)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정보공개결정을 통지하고자 합니다.

가. 신청내역
- 신청자 : 안**
- 정보공개 요청 내역 : 폐석면 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서 관련 정보공개

나. 정보공개 여부 : 부분공개(세부내역은 붙임 참조)

다. 정보공개 내용
- 신고일자, **배출자성명(법인명만 공개)**, 배출장소, 배출자주거지 주소(정보없음) 배출량, 처리담당자(직책 및 성명)

라. 부분공개 사유
- 내용 : 폐석면 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서상의 정보공개요청
- 근거 : 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 제9조 제1항 제6호
- 사유 : 배출자성명(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성명)에 대한 내용은 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 제9조(비공개대상정보)제1항6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

마. 공개방법 : 정보통신망(수수료 납부 후 바로 공개)

바. 수수료 : 250원

붙임 : 정보공개내역 및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각 1부. 끝.

주무관 정경화 수질보전팀장 **조용숙** 환경과장 **정인호** 복지환경국장 전결 10/22 **유용렬**

협조자 주무관 **최성렬**

시행 환경과-34173 (2015.10.22) 접수 ( )

우 0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) 본관5층 / http://www.junggu.seoul.kr
전화 3396-5613 /전송 02-3396-4335 / 20090221331@junggu.seoul.kr / 부분공개(6)